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79th April 2015

- ▶ WHERE IS GRACE CHANG?:
영춘화를 아시나요?
.....2
- ▶ ABOUT WRITERS
.....2
- ▶ COVER STORY:
스마트워치의 관세논쟁 종결
.....3
- ▶ FTA NEWS:
농산물 원산지증명,
'농산물 인증서' 하나면 OK!
.....5
- ▶ VOICES FROM THE FIELDS:
五十而知天命, 50 주년이 정초가 되어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며
.....7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9
- ▶ CUSTOMS PRECEDENT ㉞
.....11
- ▶ TRADE NEWS
글로벌 무역 동향 - 미국 서부 항만 태업과
물류지연
.....13



[사진출처 - BEAR BETTER 이진희 대표]



SHINHAN Since 1965
CUSTOMS SERVICE

www.customsservice.co.kr
www.ftagateway.co.kr

WHERE IS GRACE CHANG?

영춘화를 아시나요?



장승희
대표 관세사

4 월의 꽃을 아시나요? 네, 바로 개나리입니다. 전국을 노랗게 수놓으며 봄을 맞이하는 전령사로 일컬어 집니다. '나리 나리 개나리 입에 따라 물고요. 병아리떼 종종종 봄 나들이 갑니다.'라는 동요에도 주인공으로 등장하듯 봄을 대표하는 꽃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 '깊은 정' 이라는 꽃말이 상징하듯 절망처럼 느껴지는 차가운 겨울을 깨고 따뜻한 희망의 봄이 왔음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잿빛의 앙상한 풍경을 깨며 가장 먼저 피는 꽃은 영춘화(迎春花)라고 합니다. '봄을 맞는 꽃'이라는 이름에 맞게 3 월초에 봄을 환영하며 노란 꽃을 피웁니다.

꽃잎이 4 장인 개나리와 달리 6 장의 꽃잎을 갖고 있으나 닳은 점이 많습니다. 동일하게 물푸레나무 과에 속해있고, '희망'이라는 꽃말도 같으며, 꽃이 잎보다 먼저 나오는 것, 2 주가량 차이는 있으나 봄을 깨우는 꽃이라는 점도 동일합니다. 또 한가지 차이점이라면 한국 토종인 개나리와 달리 영춘화는 중국이 원산지입니다.

중국이 원산지이기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영춘화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봄을 깨우는 화신(花信)이라는 별호는커녕 개나리도 아닌 것이 개나리인 척 한다는 오해도 받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합니다. 칭찬이라는 긍정적인 힘은 해양관에 갇혀 있는 거대한 고래에게 환상적 점프의 멋진 쇼를 하게 합니다. 긍정적 관심을 갖고 칭찬하며 격려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칭찬을 받지 못하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나는 나 자체로 귀중하니 나를 인정하고 매 순간을 살아라'라고 합니다. 자아존중감 즉, 자존감은 내 자신을 존중해 주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꽃으로 오해를 받고 있어도 곳곳하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영춘화에서 배웁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쓰기 이전에 스스로 자존감을 키워야 합니다. 인정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정하고 칭찬해주어야 합니다. 고래부터 내 동료까지 가까운 사람들에게 긍정적 관심을 갖고 칭찬하여야 합니다.

'행복은 내가 좋은 사람들에게 돌려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Voices From The Fields 는 여성통일연구회 사무총장이신 이명화박사님의 글입니다. 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신한관세법인이 춤을 출 수는 없으니 제가 춤을 출까요?

감사합니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Grace Chang*

ABOUT WRITERS

COVER STORY -

스마트워치의 관세논쟁
종결



최 성 지 관세사
(sjchoi@customsservice.co.kr)

FTA News-

농산물 원산지증명,
'농산물 인증서'하나면
OK!



이 길 준 관세사
(gilee@customsservice.co.kr)

Voices From The Fields-

五十而知天命, 50 주년인
정초가 되어 더욱 발전
하기를 바라며



이 명 화 사무총장
(brightlemh@hanmail.net)

관세 법령 변경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유 입 세 관세사
(isyoo@customsservice.co.kr)

Customs Preceden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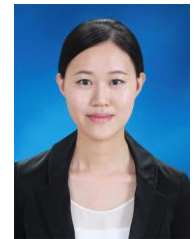
보세공장 제품과세 시
쟁점 생산지원비용의
가산 여부



양 원 아 관세사
(wang@customsservice.co.kr)

Trade News-

글로벌 무역 동향 - 미국
서부 한만 태업과
물류 지연



김 효 선 대리
(hskim@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컨설팅 1팀
- FTA 컨설팅 전문관세사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본부
컨설팅 3팀
- FTA 컨설팅 경력다수

PROFILE

- 여성통일연구회 사무총장
- 환경리더스포럼 이사
- 前 한국방송대, 성균관대,
서울/인천 시립대, 단국대
서울, 상명대, 배재대 등
행정학과 강사
- 前 국제공무원교육원 교수
- 前 관세청, 서울, 천안,
대전, 인천, 속초, 김포
세관 등 근무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경기 지사
- 前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컨설팅 5팀
- FTA 컨설팅 경력다수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본부
컨설팅 5팀
- FTA 원산지 컨설팅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컨설팅 1팀
- FTA 원산지 컨설팅
- 원산지관리사

Cover Story

스마트워치의 관세논쟁 종결

I. 개요

2000년대 중반 이후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포화 상태에 달한 가운데 국내 통신장비업체는 보급형 중저가폰과 스마트워치를 개발하여 차세대 모바일 시장의 돌파구를 찾았다.

스마트워치는 손목시계처럼 착용하고 스마트폰과 연동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국내는 2013년에 처음으로 출시하였다. 최근, 이러한 스마트워치를 통신기기로 분류할지 시계로 분류할지 관세논쟁이 불거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알아보려고 한다.

II. 주요 쟁점사항

1. 수입국의 품목분류

스마트워치의 HS CODE에 대한 명확한 국제기준이 없어 국가별로 상이함에 따라 스마트워치 수출국인 우리나라는 통신기기로 분류하는 반면 수입국인 터키, 태국, 인도 등은 시계로 분류하여 5~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해당 수입국은 스마트워치의 품목분류 시 외형과 품명을 중요한 분류기준으로 보고 통화, 문자수신, 알람 등은 부수적 또는 선택적인 기능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자 수 세계 3위로, 앞으로 스마트워치 최대 판매시장으로 꼽히는 인도는 이를 시계로 분류하여 현재 수입가격의 10%(한국산은 3.1%)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태국은 5%(한국산은 0%)의 관세를 부과한다.

2. 수출국 품목분류

WTO 정보무역협정(ITA)의 무관세 품목에 통신기기가 포함됨에 따라 스마트워치 수출강국인 우리정부는 품목분류상 통신기기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의제로 제출하였다.

우리정부는 스마트워치의 주기능이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전화통화를 할 수 있고, 문자수신과 GPS(Global Position System, 위성항법장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통신기기에 부합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시계는 무브먼트(시간조정장치)를 통해 시간 자체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위성에서 시간 정보를 받는 것을 단순히 표시하므로 부수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III. 세계관세기구(WCO) 판결

1. 통신기기로 판결한 세계관세기구(WCO)

3월 16일에 벨기에에서 열린 제 5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HSC)에서는 우리정부가 의제한 안건을 채택하여 스마트워치를 시계가 아닌 무선 통신기기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였다.

올해 5 월 말까지 179 개 WCO 회원국의 이의 제기가 없을 시 이번 품목분류 안이 최종 확정되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용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2. 국내 통신장비업체의 수출증대 청신호

스마트워치 시장은 2013 년 첫 선을 보인 이래로 점차 가속화되어 2017년에는 전 세계 사용자가 5,500 만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HSC 의 결정에 따라 스마트워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 시 통신기기에 부과되는 세율인 0%을 적용 받게 되어 국내 통신장비업체는 상당한

관세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인도 등 신흥시장에 판매 시, 가격경쟁력이 상승하여 수출증대의 효과가 기대된다.

VI. 맺음말

품목분류에 따라 동일한 제품의 관세부과 여부와 세율이 상이하여 수입국 세수와 직결되므로 정확한 HS CODE 분류는 물품의 수출입 시, 중요한 사안이다.

이번 HSC 의 결정은 스마트워치를 주기능 및 용도에 따라 통신기기로 분류하였으나, 후속으로 출시하는 스마트워치가 통신기기 외 추가적인 주기능을 내재한다면 품목분류가 변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후속으로 출시하는 제품도 WCO 에 의제를 제기하여 명확히 품목분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WCO 판결 안이 회원국에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서 보다 강력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안건제정이 필요한 때이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 성 지
sjchoi@customsservice.co.kr

농산물 원산지증명, '농산물 인증서' 하나면 OK!

1. 개요

농산물에 대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인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완전생산기준은 완전히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루어진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산지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다만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는 종류가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원산지 증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최근 3 월부터 우리 농산물의 FTA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한 각종 인증서가 별도의 절차 없이 FTA 수출에 필요한 원산지 증빙서류로 인정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2. 농산물 원산지증빙서류의 간소화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로 농지원부, 경작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 및 제출해야 했으나 간소화 조치로 인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 받은자 포함)이 발급하는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 3 종은 해당 서류만으로 원산지 증빙서류로 인정받게 된다.

상기 서류만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원산지조사 등 업무 수행시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FTA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p>서류 양식</p>			
<p>서류명</p>	<p>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p>	<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p>	<p>친환경농산물인증서</p>
<p>발급 근거</p>	<p>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 24 조(이력추적관리)</p>	<p>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 6 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p>	<p>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 조(유기식품등의 인증)</p>
<p>관련 사이트</p>	<p>http://www.gap.go.kr</p>	<p>http://www.gap.go.kr</p>	<p>http://www.enviagro.go.kr</p>

3. 맺음말

우리가 시장이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에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마크가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증 마크를 얻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파종단계 부터 출하단계까지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안전한 먹거리 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증빙서류로서 활용할 수 있었다. 이제는 제도적으로 농산물 관련 인증을

받았다면 복잡한 원산지증빙서류 없이 인증서 하나로 FTA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수출 농가에서 FTA 활용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길준
(gjlee@customsservice.co.kr)

Voices From The Fields

五十而知天命,
50 주년이 정초가 되어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며

신한관세법인 50주년 행사 통지가 이메일과 문자로 왔다. 퇴직 후가 더 바쁘다. 자신을 위해 그동안 못했던 일을 하느라. 행사 즈음에는 시간 맞춰 급히 해야 할 일이 있어 참석할까 말까 고민했다. 평소 장승희 대표 관세사가 가업을 잇기 위해 진로를 변경했다는 이야기에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장흥진 대표 관세사가 딸에 대한 신뢰가 돈독했는지, 자신의 삶의 전부이자 삶의 터전을 지킬 것을 당부하는 부친의 마음과, 이를 순수히 받아들인 장승희 대표 관세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부러울 따름이다. 가족이나 조직 구성원이 대의를 위하여 한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신한관세법인 50주년행사에서 당시 서울통관사 직원들이 성실했던 이유를 확인하게 된다. 1965년 3월 22일 3명의 직원과 함께 시작하면서 자신감있고 활기찬 사가를 직접 작사했다는 이야기에 깜짝 놀랐다. 논어 위정편(爲政篇)의 '五十而知天命(오십이지천명)'에 50세는 지천명·지명(知天命·知命)으로 쉰 살에 드디어 천명을 알게 된다는 뜻이 생각났다. 행사장에서 요즘 나의 관심사인, 시간에 관한 철학자들의 생각, 사람의 마음, 그리고 분재기(分財記) 중에서 별급(別給)이 문득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가? 아우구스티누스『고백록』제18권, 20장에서 “과거의 현재인 기억(memoria), 현재의 현재인 직관 혹은 지각(contuitus), 미래의 현재인 기대(expectatio)로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현재를 사는 사람의 마음이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철학자들의 생각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시공을 초월한 사가... 낭독할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한편의 시같은...

1. 희망찬 아침 해가 솟아오를 때, 신념과 보람을 한가슴 안고, 힘차게 내딛는 발걸음 속엔 오늘도 내일도 전진이로세~

(후렴)보아라 노력 끝에 얻은 결실은 영원한 향상과 발전뿐이다.

2. 냇물이 모여서 바다 이루듯, 너와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믿고 서로 돕는 복된 우리들, 찬란히 빛나리 신한의 가족

(후렴)보아라 노력 끝에 얻은 결실은 영원한 향상과 발전뿐이다.

서울통관사와 인연은 서울세관 서부역 시절(중구 만리동 소재, 현 서부역 터미널컨테이너물류보관창고)부터이다. 1980년 6월 서울세관이 논현동으로 옮기기 전,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서울세관 무환과(無換課, non-draft section; 현재 수입과)에서 접수, 수입면허 그리고 여직원으로는 최초로 세관 검사를 하는 영광을 얻었다. 미8군을 대상으로 하는 SOFA 면세통관(오토바이 등 소액면세), 화장품, 여성용 액세서리, 당시 최고 인기물품인 Sony Color TV 등 내구소비재물품 등 여성이 더 잘 할 수 있는 품목을 검사하면서, 존경하는 선배로부터 배울 수 있는 영광스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 당시 여러 관세사들과 함께 일을 하였는데, 서울통관사 직원들이 성실하게 협조하였던 기억이 있었다. 여직원 최초로 세관검사를 한 것, 서울통관사와 협업이 잘 된 것 모두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퇴직 후,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집에서 가까운 한국학중앙연구소(전 정신문화연구소, 분당구 운중동 소재)에서 고문서강독을 듣는다. 재산상속에 해당되는 분재기는 가족의 운영과 경제적 존속을 이끌어 가는 힘이다. 특히 별급은 재주(財主)가 상속인의 특별한 능력이나 행위에 대하여 정식분재 이전에 특별히 행해지는 사전 증여로 혼인, 과거

합격, 효행, 사랑 등 가문을 잇는데 도움이 되거나 부모에게 효도나 시봉(侍奉)을 행했을 때 재주가 축하하거나 고마운 마음을 표하며 재산을 지급한다. 균분시대의 여성은 가장으로서 가정경영 및 조상·부모 봉사를 주도하여, 많은 여성들은 자기 몫의 부를 바탕으로 전답 및 노비의 매매와 사속 그리고 소송을 통한 재산권 확보에 적극적이었다. '장가를 가는' 시절의 여성은 친정 부모에게서 재산을 상속 받았고 이 재산은 남편이 그들 부모로 받은 재산과 별개로 부부 각자가 각각의 몫(衿)별로 관리하고 상속하고 매도할 수 있는 처분권이 있었다. 이처럼 분재기에 사회·생활·가족사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다.

Passion, Integrity, Innovation, Teamwork. 신한관세법인의 경영이념은 고객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진 전문가들이 정성스레 힘을 모아 감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첫째, 늘 초심의 마음으로 정성을 기울이며, 둘째, 자신에게 서로에게 고객에게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셋째, 늘 호기심을 갖고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발전하며, 넷째, 혼자가 아닌 함께, 서로를 이끌어주며 힘을 합친다. 고객의 발전을 위해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마음, 한마음! 사람을 소우주라고 하듯, 마음속에 세상이 있고, 미래가 있다.

이번 50주년을 계기로 50년간 축적된 시간과 경험이 고객과 함께 신한관세인과 신한관세법인의 지속가능한 밝은 미래의 초석이 되어 장승희 대표 관세사를 중심으로 한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희망차게 나아가기를 바란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신한관세법인의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영원한 향상과 발전을 기대합니다.

여성통일연구회
사무총장 이명화
(brightlemh@hanmail.net)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 사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중 일정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26089호, 2015. 2. 6. 공포·시행)됨에 따라, 가산세 경감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시 시간적 요건의 해석·적용 방법을 보완하고, 일부 장애인용품을 관세면제 대상품목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1)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시 시간적 요건의 해석·적용 방법 보완(제7조 제1항 제2호 단서 신설)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의 시간적 요건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이 유사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여 해석·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가산세 일부경감 배제사유 신설(제9조의2 신설)

납세자가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가산세를 일부경감하지 아니하도록 함.

(3) 관세 등 환급가산금 이율 변경(제9조의3)

- (현행) 연 34/1,000 → (개정) 연 25/1,000

- (대상) 보정이자(「관세법」제38조의2제5항) 및 환급가산금(법 제48조)

(4) 시각장애인 및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하는 일부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별표 2)

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이 시력 발달을 위하여 사용하는 콘택트렌즈와 만성신부전증

3. 시행일자 : 2015년 3월 6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 사유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물품을 수출한 뒤 정액환급률표(定額還給率表)에 따른 금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일 것의 요건을 추가하여 일부 중소기업이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에 6억원을 초과하여 환급 받는 사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요건 추가(제12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억원 이하일 것

2.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6억원 이하일 것

3. 시행일자 : 2015년 7월 1일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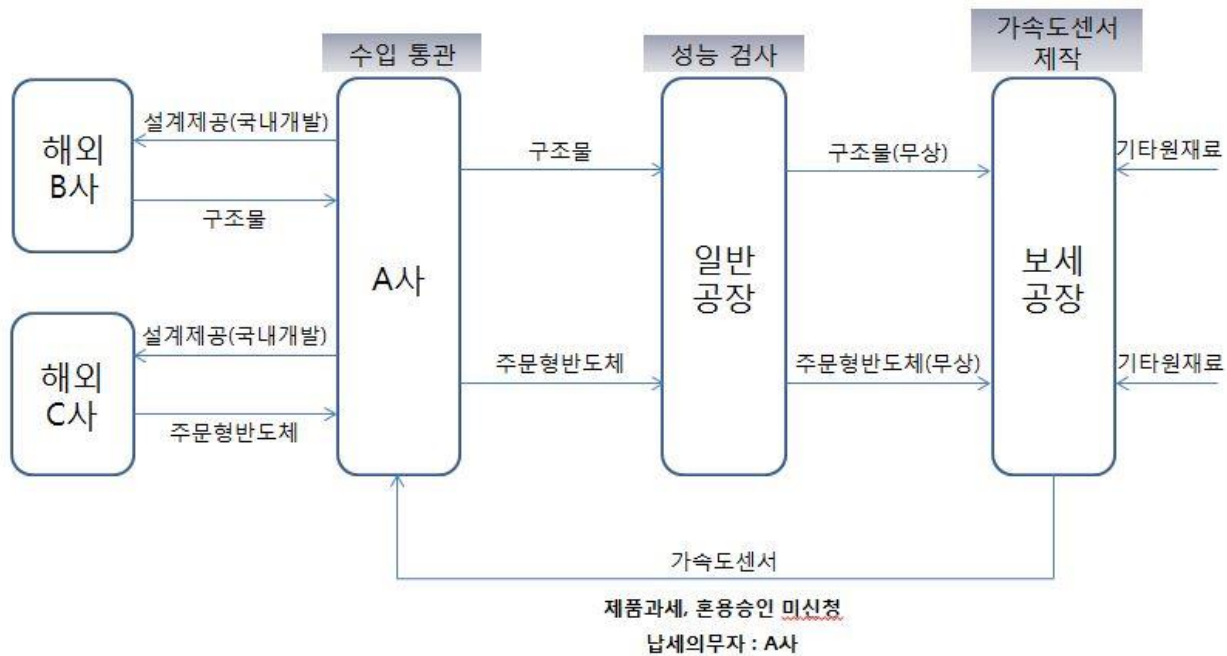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유 입 세
(isyoo@customsservice.co.kr)

Customs Precedent ©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사항으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보세공장 제품과세 시 쟁점 생산지원비용의 가산 여부 (2013년 제2회 관세평가협의회 안건 1)

I. 사실관계

□ 거래개요



- A사는 가속도센서 제작을 위한 구조물과 주문형반도체의 설계도를 각각 해외 B사와 해외 C사에 제공
- 구조물과 주문형반도체를 수입하는 때에 국내 설계비용은 과세가격에 불포함
- 일반공장에서 두 가지 자재에 대한 성능 검사 수행, 검사 완료 후 보세공장에 가속도센서 제작 위탁
- 보세공장은 A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된 두 자재와 기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속도센서를

제작

- A사는 가속도센서를 제품과세(혼용승인 미신청)하여 수입통관

II. 쟁점

A사가 해외위탁생산 후 수입한 원자재를 국내 테스트를 거쳐 보세공장에 무상 지원한 경우, **보세공장 생산 제품의 제품과세 시 다음 비용의 가산 여부**

<쟁점 1> 원자재 해외 생산 시 지원한 국내 설계

도면에 대한 **설계 비용**

<쟁점 2> 원자재 수입 시 부과된 환급 불가능한 제세, 통관 관련 부대비용, 내국운송료, 검사비 등 **수입항 도착 후 보세공장 인도 전 국내 발생비용**

Ⅲ. 결정내용

제품과세 시 내·외국물품의 혼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제품 전체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아, **내국물품화 된 두 원자재 가격을** 제품과세 시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함.

□ 국내설계비용의 가산

- 국내 발생 부가가치에 따른 공제
구조물과 주문형반도체의 수입 시 그 설계비용은 **국내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에 해당**되므로, ¹ 관세법 시행령 제 18 조 제 4 호 규정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생산지원비에 해당하지 않음.
- 제품과세 시 가산
국내설계비용이 다른 생산지원물품에 체화되어 지원된 경우, 동 비용을 포함하여 가격을 산정함.

□ 보세공장 인도 전 국내 발생비용의 가산

- 생산지원물품 가격의 범위
관세법 시행규칙 제 4 조 제 3 항에 따라 생산지원물품의 가격은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므로, 제품과세 시 해당 국내 발생비용은 가산되어야 함.

IV. 필자 의견

쟁점 1 관련하여 보세공장 생산 제품의 과세가격에 기공제된 국내설계비용이 가산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비용에 대해 **이중공제** 되므로, 제품과세 시 해당 생산지원비는 가산되어야 하며,
쟁점 2 관련하여 원자재 수입 시 부과된 환급 불가능한 제세, 통관 관련 부대비용, 내국운송료, 일반공장에서의 검사비 등은 보세공장에서의 **수입 이전에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제품과세 시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됨.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양 원 아

wayang@customsservice.co.kr

¹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생산지원비용은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의장을 말함. 단,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

Trade News

글로벌 무역 동향 - 미국 서부 항만 태업과 물류 지연

1. 미국 서부 항만 소개

미국의 대외수출입에서 서부 지역은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한다. 그 중 서부 항만은 미 전체 무역 컨테이너 물동량의 47%를 처리하고 있으며,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Los Angeles 항과 Long Beach 항이 있는 LA 통관지구만 하더라도 미국 전체 무역의 10.8%를 차지한다. 미국 서부의 물량이 많은 이유는 미국의 대외수출입에 있어 아시아와 미국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함과 동시에 내륙으로의 연계 교통망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태평양선주협회는 고의적으로 작업을 늦추고 있는 노조에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일부 항만에 폐쇄 조치를 내렸다.

3. 협상 타결과 현재 상황

항만 폐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서부 항만 노조의 태업을 올해 2월에 협상이 타결되면서 종료되었다. 태업에 따른 물류정체는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으나, 기존에 적체된 물량과 새롭게 들어오는 물량으로 인한 적체가 여전히 지속돼 정상화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미 선주협 "더 이상 못참아" ..., 한국경제 2015.02.13]

2. 항만 노조 태업 배경

지난해 5월 서부항만노조(ILWU)와 태평양선주협회(PMA)의 고용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었다. 항만 노조는 인력 충원 및 컨테이너 트레일러 등 물류 인프라 구축을 요구했으나, 선주협회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작년 11월부터 평일 작업시간을 줄이고 야간 또는 주말출근을 하는 등 본격적인 태업에 돌입했다.

4. 한국 수출입기업에 미치는 영향

서부 항만을 통해 대미 수출의 31.1%(금액기준)를 처리하고 있는 한국의 수출기업들 또한 이번 태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역비부터 내륙운송을 위한 적재비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보면, 기존에는 40 피트 컨테이너 처리 비용이 2,000 달러였으나, 통관 지연으로 인한 항만적체료가 추가되어 5,000 달러까지 그 비용이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물품 납기 지연에 따른 패널티 및 물류센터까지의 컨테이너 운송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도 수출업체가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유통기한이 짧고 냉동·냉장보관이 필요한 식품이나 소비패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의류 및 원단 등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경우, 원부자재 조달에 차질이

생기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장 가동이 늦춰지는 등 연이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입기업들은 이러한 물류 적체 현상을 피하기 위해 항공운송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운송 비용증가 문제와 항공기로 운송할 수 있는 화물량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 외에도 시애틀이나 밴쿠버 등 타 항만으로 우회하거나 동부 항만으로 우회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물동량이 많아 인접 항만들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거의 모든 수출입기업들이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출업체와 바이어, 물류업체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혹시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공동으로 '미 서부항만 물류지원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입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지의 전문가들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서부항만의 물류 적체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면 많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미국 서부항만 물류지원 기업 애로신고센터 (KOTRA)
KOTRA 선진시장팀 류태현 대리
th.Ryu@kotra.or.kr / 02-3460-7323

신한관세법인
대리 김 효 선
(hskim@customsservice.co.kr)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Shinhan**